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36 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 송언석 · 정희용 · 구자근

박덕흠 • 홍석준 • 김용판

김정재 · 정진석 · 허은아

김기현 · 임이자 · 김형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,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,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.

그런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담보물인 현물출자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, 저당권의 설정으로 목적물의 압류는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

사를 추가함으로써,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58조 단서). 법률 제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 단서 중 "미납으로"를 "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(운송사업자가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)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동차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58조(압류금지) 제40조제3항에 | 제58조(압류금지) |
|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| |
|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 | |
| 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| |
|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. | |
| 다만,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| |
| 세금 또는 벌금·과태료 <u>미납</u> | <u>미납</u> |
| <u>으로</u>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 | 및 저당권의 설정(운송사업자가 |
|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|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|
| 하다. |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 |
| | 한다)으로 |
| | |
| | |